

1

**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고시 주요내용**

○ (목적)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른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에 필요한 **평가기준, 평가방법, 평가절차, 결과통보 및 수수료**를 정함

○ (평가기준)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(유치실적, 전문인력 보유, 의료분쟁 예방 등), 환자안전체계(안전보장, 진료, 감염관리 등)로 2개 영역, 6장, 16범주, 32기준, 130항목으로 구성

\*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신청 가능하며, 이에 따라 “**환자안전체계**” 부문 평가를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“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”에 대해서만 평가

○ (평가절차) 평가 지정 **공고**(주관기관) → 평가 지정 **신청**(평가기관)→ **조사계획 수립**(접수일로부터 30일내, 평가기관) → **현지조사**(평가기관)→ **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**(평가기관)

주관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평가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
평가단 구성: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 + 조사 보조원 2인

○ (지정절차) 분기별 **지정심의위원회\*** 심의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→ **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**(주관기관,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) → **신청기관에 통보**(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)

\* (구성) 평가·지정 제도 개선 등 심의를 위해 5-10인 위원,  
(임명) 복지부장관·문체부장관·주관기관·평가기관 장이 추천하는 사람,  
기타 보건의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임명

○ (수수료) 병원급 이상은 57만원, 의원급은 114만원

○ 기준의 구성 (2개 영역, 6개 장, 16개 범주, 32개 기준, 130개 조사항목)

장	범주	조사기준	항목	종별분류	
				병원급 이상	의원
<b>I.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</b>	<b>5</b>	<b>12</b>	<b>58</b>	<b>58</b>	<b>53</b>
1.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	1.1 지속적인 유치 및 관리	1.1.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	4	4	4
		1.1.2 사후관리서비스	5	5	2
		1.1.3 합리적 운영	5	5	5
	1.2 홍보 및 활동실적	1.2.1 정보접근성	4	4	4
		1.2.2 유치채널 확보	3	3	3
		2.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	2.1 전문인력의 보유	3	3
2.1 보유인력의 적정성	2.1.1 전문인력의 보유	3	3	3	
	2.1.2 전문의 환자진료체계	6	6	6	
	3. 의료분쟁 예방및 기타	3.1.1 환자권리존중	6	6	6
		3.1.2 동의서	6	6	6
3.1.3 의료분쟁 예방 및 처리체계		6	6	6	
3.2 편익제공 및 고충처리	3.2.1 불만고충처리	4	4	4	
	3.2.2 환자 편의제공 여부	6	6	4	
	<b>II. 환자안전체계</b>	<b>11</b>	<b>20</b>	<b>72 (의원급 기관만 해당)</b>	
4. 안전보장활동	4.1 환자안전	4.1.1 정확한 환자확인	5		5
		4.1.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3		3
		4.1.3 수술/시술의 정확한 수행	5		5
		4.1.4 낙상 예방활동	2		2
		4.1.5 손위생 수행	3		3
	4.2 화재안전	4.2 화재안전 관리활동	3		3
4.3 환자안전 보고체계운영	4.3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2		2	
5. 환자진료	5.1 응급상황	5.1 응급상황대처	3		3
	5.2 수술/시술관리	5.2.1 수술/시술 계획	4		4
		5.2.2 수술/시술 중 환자안전보장	5		5
	5.3 마취진정관리	5.3.1 진정 치료	4		4
		5.3.2 마취 진료	5		5
		5.3.3 환자상태 모니터링	3		3
	5.4 의약품관리체계	5.4 의약품관리체계	5		5
5.5 처방 및 투약	5.5 처방 및 투약	2		2	
6. 감염관리	6.1 감염관리체계	6.1.1 감염관리체계	2		2
		6.1.2 의료기구 감염관리	4		4
		6.1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6		6
	6.2 부서 감염관리	6.2 수술/시술장 감염관리	3		3
	6.3 의료기기 관리	6.3 의료기기관리	3		3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

2017년 6월 26일  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### 1. 사업목적

-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,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신청기간

- (접수기간) 2017년 6월 26일(월)부터 연내 상시 접수
- (신청접수) 의료기관평가인증원(평가기관)으로 평가 신청 접수
  - \*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

### 3. 신청자격

-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의료해외진출법」)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
-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취득한 기관

\*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,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### 4. 현지조사 및 평가방법

- 현지조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 하에 조율 가능
- 평가방법은 문서검토, 현지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하며,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로 나누어 평가하되 평가 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조사방법으로 평가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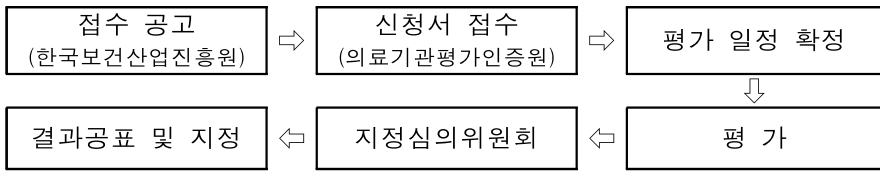
#### <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조사항목 >

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	환자안전 체계
1.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	4. 안전보장활동
2. 전문 인력 및 전문의 보유	5. 환자진료
3.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	6. 감염관리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을 획득하여야 신청 가능하므로 평가항목 중 '환자안전체계' 항목의 조사 면제
  - \* 현지조사 시점부터 최종 지정시점까지 의료법에 따른 인증효력 유지 전제
- 의원급 유치의료기관은 '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'와 '환자안전체계' 두 부분의 항목을 모두 조사

### 5. 절차 및 판정기준

- 평가·지정 절차



※ 신청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음 (평가 지정에 관한 고시 제 15조)

○ 합격 판정 기준

등급	①필수항목	필요 득점 수준			비 고
		②전체	③장별	④기준별	
합격	무 또는 하 없음	항목평균 8점 이상	항목 평균 7점 이상	항목 평균 5점 이상	①~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

\* 조사항목 충족기준 상 10점/ 중 5점/ 하 0점 (유 10점/ 무 0점)

## 6. 지정 및 취소

- 본 공고에 따른 지정기관은 2017년 12월 중 심의를 거쳐 발표 예정
  - 2017년 11월 30일 이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에 해당. 단 2017년 11월 30일 이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은 2018년 지정 심의위원회 상정 예정
- 지정일로부터 2년, 갱신은 2년 단위로 재지정(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)
  -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 상실
- 「의료해외진출법」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,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

###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

- 제1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)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,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
- 제25조(지정의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7. 신청접수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- 접수처 :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(여의도동) 10층 우편번호 07283  
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
(02-2076-0610, policy@koiha.or.kr)
- 제출서류
  -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·지정 신청서(붙임1 양식)
  - ② 의료기관 운영보고서(붙임2 양식)

### 첨부서류 참고

1.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
2.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
3.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
4.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
5.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
6.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

## 8. 비용 납부 안내

- 납부 방법 : 현지조사 시행 30일 전까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전용계좌로 입금
- 계좌 번호 : 신한은행 140-010-162931
- 계좌명 :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
< 유치의료기관 평가 수수료 >

구분	조사위원수	조사일수	평가비용
병원급 이상	2인	1일	570,000원
의원			1,140,000원

※ 평가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

## 9. 설명회

- 일시·장소: 2017년 7월 21일(금), 장소 추후 공지 예정
- 신청방법: 이메일을 통한 사전신청  
※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(policy@koiha.or.kr)
- 신청양식: 기관명, 신청자(직급), 연락처(전화번호,이메일), 참여자 인원 수

## 3

##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 안내

### 1 과정 개요

- (과정명)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
- (교육목표)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재직자 대상 **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, 외국인환자 리스크 관리, 법률 및 의료분쟁 예방, 국제의료 행정서비스** 등 역량 강화
- (교육대상)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재직자 및 관심 있는 자
- (교육일정) 상·하반기 / 총 16시간, 4회 예정

기수	일시	대상	장소
1기	2017.6.28.(수) ~ 6.29.(목)	의원급	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
2기	2017.7.12.(수) ~ 7.13.(목)	병원급	서울 보건산업교육본부
3기	2017.9.27.(수) ~ 9.28.(목)	의원급	지역(부산·대구 예정)
4기	2017.10.18.(수) ~ 10.19.(목)	병원급	지역(부산·대구 예정)

\* 계획인원 모집 미달 시 교육일정 변경

- (교육장소) 보건산업교육본부 및 지역
- (교육인원) 기수별 20명씩, 총 4회, 총 80명
- (교육비) 무료
- (수료기준) 전체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참석시 수료(수료증 발급)

### 2 교육내용

- (교육내용)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도(의원급, 병원급) 외국인환자 의료 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,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률,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체제 등

교과목		주요내용	세부내용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·지정제도	의원급	평가지정제도 개요 및 의료기관 준비사항	- 신청자격, 조사방법 및 평가항목, 절차 및 판정기준, 비용 등
		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-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-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-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
		환자안전체계	- 안전보장활동 - 환자진료 - 감염관리
	병원급	평가지정제도 개요 및 의료기관 준비사항	- 신청자격, 조사방법 및 평가항목, 절차 및 판정기준, 비용 등
		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-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 -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- 의료분쟁 예방 및 기타
	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	국가별 의료문화 및 의료환경 이해	- 국가별 문화 이해 - 국가별 의료 환경 및 문화 이해
국가별 외국인환자 리스크관리		- 외국인환자 리스크 관리 개념 -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-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프로세스 단계별 리스크 관리 - 외국인환자 리스크 관리 사례	
국가별 외국인환자 의료 커뮤니케이션 스킬		- 외국인환자 응대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실습	
외국인환자 관련 법률 및 의료분쟁	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률	-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-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제도 - 국제의료 관련 병원 내 법적 준비사항,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, 주의사항 등	
	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	-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- 외국인환자 비의료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- 사례 연습 및 토의	
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체제	국제의료 행정서비스 이해 (행정 프로세스 이해 및 구축, 홍보, 마케팅, 조직 관리 등)	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행정 프로세스 이해 및 구축 -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 구축 및 마케팅, 홍보 -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조직관리 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사례 발표 및 토의	

- 교육시간표

교시	1	2	3	4	5	6	7	8	9
시간	09:10 10:00	10:10 11:00	11:10 12:00	12:10 13:00	13:10 14:00	14:10 15:00	15:10 16:00	16:10 17:00	17:10 18:00
1일차	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·지정 제도 (의료기관인증평가원)				중식	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			
2일차	외국인환자 관련 법률 및 의료분쟁				중식	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체제			

### 3 신청 안내

○ (신청방법) 보건산업교육본부 홈페이지(hie.kohi.or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


○ (문의처)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(02-3299-1400)